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1단지 입주자 모집공고 (공동주택)

- 당사 건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53)961-670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 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고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t/2021/yonggye>)** 운영 안내
 -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1단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건본주택 관리를 홈페이지와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 당첨자 (예비 입주자 포함) 자격 확인서류는 당첨자 발표 이후 별도로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본 서류는 홈페이지 공지)
 - 당첨자 (예비 입주자 포함) 건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건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본 아파트가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홈페이지에서 시간을 예약하신 분께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건본주택을 관람하도록 합니다.
 - 사전 예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문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건본주택 입장 전, 관람 또는 상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 및 체온측정기를 통한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당 건본주택에서 확인 기준) · 입장 시 손 소독제, 감염 확산 예방 조치 (소독수 분사, 체온측정 등)에 불응 할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기타 건본주택 운영자 및 관련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본 아파트는 대표전화((053)961-6700)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모든 상담원이 상담 중으로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5.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6.17.**입니다.(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동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동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6.17)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64호 (2017.09.20.)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2020.12.17.이전부터 계속 거주)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구분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주택 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단,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규제지역)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규제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전용 85㎡이하 주택은 가점제 75% 추첨제 25% ,85㎡ 초과주택은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네이버 인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00%(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고,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청약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개편으로 인해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됩니다.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개편으로 인한 예외사항 외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특별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합니다.
 -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제한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인 경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청약과열지구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유지되며,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

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대구광역시 동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지역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 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간(3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택법」 제6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위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는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 인정 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여부, 정부정책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하거나 거부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 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공급 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

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6조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 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는 인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법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 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흥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계약제결
		1순위 6개월 이상		2순위		
		해당지역 (대구 6개월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대구 6개월 미만/경북 거주자)	대구/경북 거주자 중 1순위 해당되지 않는 자		
일 정	2021.06.28.(월)	2021.06.29.(화)	2021.06.30.(수)	2021.07.01.(목)	2021.07.07.(수)	2021.07.19.(월) ~ 2021.07.23.(금)
방 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모델하우스 현장접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 (08: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 (08: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접수 (08: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발표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모델하우스 현장접수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1023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모델하우스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1023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모델하우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을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인증)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 및 마감재 목록표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 후 정책변경 및 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27213호(2021.06.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575-12
- 공급규모 : 지하2층, 지상15층 아파트 12동 총 745세대 중 일반분양 3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60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71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40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4세대, 생애최초 50세대 포함)]
- 대지면적 및 연면적 : 대지면적 36,784.00㎡, 건축물연면적 총 117,544.80㎡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 주차대수 : 총 1,011 대 (공동주택 1,006대, 근생시설 5대)
- 입주예정일 : 2023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416	01	059.9900A	59A	59.9900	19.1243	79.1143	38.4637	117.5780	36.5012	57	6	6	11	1	4	28	29	4
		02	059.9900B	59B	59.9900	19.8643	79.8543	38.4637	118.3180	36.5012	58	6	6	11	1	4	28	30	4
		03	074.9900A	74A	74.9900	22.7059	97.6959	48.0811	145.7771	45.6281	82	8	8	17	3	6	42	40	6
		04	084.9900A	84A	84.9900	25.2670	110.2570	54.4928	164.7498	51.7127	258	25	26	51	8	18	128	130	19
		05	084.9900B	84B	84.9900	25.5770	110.5670	54.4928	165.0598	51.7127	171	18	17	34	6	12	87	84	12
		06	084.9900C	84C	84.9900	26.9970	111.9870	54.4928	166.4798	51.7127	7	1	1	2	1	1	6	1	1
		07	084.9900D	84D	84.9900	26.7070	111.6970	54.4928	166.1898	51.7127	69	7	7	14	2	5	35	34	5
		08	099.9900A	99A	99.9900	28.9186	128.9086	64.1103	193.0190	60.8395	43	0	4		2		6	37	3
	소 계										745	71	75	140	24	50	360	385	54

- ※ 저층 우선 배정세대(54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385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함.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약식표기 (타입)	층별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1차	2차	1회(8.3%)	2회(8.3%)	3회(8.3%)	4회(8.3%)	5회(8.3%)	6회(8.3%)	
							계약시	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2021.11.23	2022.03.23	2022.07.23	2022.12.23	2023.03.23	2023.07.23	
59A	1층	2	126,230,000	169,250,000	-	295,480,000	10,000,000	19,548,000	24,623,000	24,623,000	24,623,000	24,623,000	24,623,000	24,623,000	118,194,000
	2층	4	130,390,000	174,830,000	-	305,220,000	10,000,000	20,522,000	25,435,000	25,435,000	25,435,000	25,435,000	25,435,000	25,435,000	122,088,000
	3층	4	133,170,000	178,550,000	-	311,720,000	10,000,000	21,172,000	25,977,000	25,977,000	25,977,000	25,977,000	25,977,000	25,977,000	124,686,000
	4층	4	135,940,000	182,270,000	-	318,210,000	10,000,000	21,821,000	26,518,000	26,518,000	26,518,000	26,518,000	26,518,000	26,518,000	127,281,000
	5~7층	12	138,720,000	185,990,000	-	324,710,000	10,000,000	22,471,000	27,059,000	27,059,000	27,059,000	27,059,000	27,059,000	27,059,000	129,885,000
	8~15층	31	141,490,000	189,710,000	-	331,200,000	10,000,000	23,12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132,480,000

59B	1층	3	124,610,000	167,080,000	-	291,690,000	10,000,000	19,169,000	24,308,000	24,308,000	24,308,000	24,308,000	24,308,000	24,308,000	116,673,000
	2층	4	128,810,000	172,710,000	-	301,520,000	10,000,000	20,152,000	25,127,000	25,127,000	25,127,000	25,127,000	25,127,000	25,127,000	120,606,000
	3층	4	131,610,000	176,470,000	-	308,080,000	10,000,000	20,808,000	25,673,000	25,673,000	25,673,000	25,673,000	25,673,000	25,673,000	123,234,000
	4층	4	134,410,000	180,220,000	-	314,630,000	10,000,000	21,463,000	26,219,000	26,219,000	26,219,000	26,219,000	26,219,000	26,219,000	125,853,000
	5~7층	12	137,210,000	183,980,000	-	321,190,000	10,000,000	22,119,000	26,766,000	26,766,000	26,766,000	26,766,000	26,766,000	26,766,000	128,475,000
	8~15층	31	140,010,000	187,730,000	-	327,740,000	10,000,000	22,774,000	27,312,000	27,312,000	27,312,000	27,312,000	27,312,000	27,312,000	131,094,000
74A	1층	2	152,420,000	204,380,000	-	356,800,000	10,000,000	25,680,000	29,733,000	29,733,000	29,733,000	29,733,000	29,733,000	29,733,000	142,722,000
	2층	6	157,560,000	211,270,000	-	368,830,000	10,000,000	26,883,000	30,736,000	30,736,000	30,736,000	30,736,000	30,736,000	30,736,000	147,531,000
	3층	6	160,990,000	215,860,000	-	376,850,000	10,000,000	27,685,000	31,404,000	31,404,000	31,404,000	31,404,000	31,404,000	31,404,000	150,741,000
	4층	6	164,420,000	220,450,000	-	384,870,000	10,000,000	28,487,000	32,073,000	32,073,000	32,073,000	32,073,000	32,073,000	32,073,000	153,945,000
	5~7층	18	167,840,000	225,050,000	-	392,890,000	10,000,000	29,289,000	32,741,000	32,741,000	32,741,000	32,741,000	32,741,000	32,741,000	157,155,000
	8~15층	44	171,270,000	229,640,000	-	400,910,000	10,000,000	30,091,000	33,409,000	33,409,000	33,409,000	33,409,000	33,409,000	33,409,000	160,365,000
84A	1층	14	179,790,000	241,060,000	-	420,850,000	10,000,000	32,085,000	35,071,000	35,071,000	35,071,000	35,071,000	35,071,000	35,071,000	168,339,000
	2층	19	185,580,000	248,840,000	-	434,420,000	10,000,000	33,442,000	36,202,000	36,202,000	36,202,000	36,202,000	36,202,000	36,202,000	173,766,000
	3층	19	189,450,000	254,020,000	-	443,470,000	10,000,000	34,347,000	36,956,000	36,956,000	36,956,000	36,956,000	36,956,000	36,956,000	177,387,000
	4층	19	193,320,000	259,210,000	-	452,530,000	10,000,000	35,253,000	37,711,000	37,711,000	37,711,000	37,711,000	37,711,000	37,711,000	181,011,000
	5~7층	57	197,190,000	264,390,000	-	461,580,000	10,000,000	36,158,000	38,465,000	38,465,000	38,465,000	38,465,000	38,465,000	38,465,000	184,632,000
	8~15층	130	201,050,000	269,580,000	-	470,630,000	10,000,000	37,063,000	39,219,000	39,219,000	39,219,000	39,219,000	39,219,000	39,219,000	188,253,000
84B	1층	7	180,290,000	241,740,000	-	422,030,000	10,000,000	32,203,000	35,169,000	35,169,000	35,169,000	35,169,000	35,169,000	35,169,000	168,813,000
	2층	12	186,110,000	249,540,000	-	435,650,000	10,000,000	33,565,000	36,304,000	36,304,000	36,304,000	36,304,000	36,304,000	36,304,000	174,261,000
	3층	12	189,980,000	254,740,000	-	444,720,000	10,000,000	34,472,000	37,060,000	37,060,000	37,060,000	37,060,000	37,060,000	37,060,000	177,888,000
	4층	12	193,860,000	259,940,000	-	453,800,000	10,000,000	35,380,000	37,817,000	37,817,000	37,817,000	37,817,000	37,817,000	37,817,000	181,518,000
	5~7층	36	197,740,000	265,130,000	-	462,870,000	10,000,000	36,287,000	38,573,000	38,573,000	38,573,000	38,573,000	38,573,000	38,573,000	185,145,000
	8~15층	92	201,620,000	270,330,000	-	471,950,000	10,000,000	37,195,000	39,329,000	39,329,000	39,329,000	39,329,000	39,329,000	39,329,000	188,781,000
84C	1층	1	178,680,000	239,580,000	-	418,260,000	10,000,000	31,826,000	34,855,000	34,855,000	34,855,000	34,855,000	34,855,000	34,855,000	167,304,000
	2층	1	184,570,000	247,480,000	-	432,050,000	10,000,000	33,205,000	36,004,000	36,004,000	36,004,000	36,004,000	36,004,000	36,004,000	172,821,000
	3층	1	188,500,000	252,740,000	-	441,240,000	10,000,000	34,124,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176,496,000
	4층	1	192,420,000	258,010,000	-	450,430,000	10,000,000	35,043,000	37,536,000	37,536,000	37,536,000	37,536,000	37,536,000	37,536,000	180,171,000
	5~7층	3	196,350,000	263,280,000	-	459,630,000	10,000,000	35,963,000	38,303,000	38,303,000	38,303,000	38,303,000	38,303,000	38,303,000	183,849,000
84D	1층	2	171,340,000	229,740,000	-	401,080,000	10,000,000	30,108,000	33,423,000	33,423,000	33,423,000	33,423,000	33,423,000	33,423,000	160,434,000
	2층	5	177,220,000	237,610,000	-	414,830,000	10,000,000	31,483,000	34,569,000	34,569,000	34,569,000	34,569,000	34,569,000	34,569,000	165,933,000
	3층	5	181,130,000	242,870,000	-	424,000,000	10,000,000	32,400,000	35,333,000	35,333,000	35,333,000	35,333,000	35,333,000	35,333,000	169,602,000
	4층	5	185,050,000	248,120,000	-	433,170,000	10,000,000	33,317,000	36,098,000	36,098,000	36,098,000	36,098,000	36,098,000	36,098,000	173,265,000
	5~7층	15	188,970,000	253,370,000	-	442,340,000	10,000,000	34,234,000	36,862,000	36,862,000	36,862,000	36,862,000	36,862,000	36,862,000	176,934,000
	8~15층	37	192,880,000	258,620,000	-	451,500,000	10,000,000	35,150,000	37,625,000	37,625,000	37,625,000	37,625,000	37,625,000	37,625,000	180,600,000
99A	1층	1	203,068,000	272,320,000	27,232,000	502,620,000	10,000,000	40,262,000	41,885,000	41,885,000	41,885,000	41,885,000	41,885,000	41,885,000	201,048,000
	2층	3	209,488,000	280,920,000	28,092,000	518,500,000	10,000,000	41,850,000	43,208,000	43,208,000	43,208,000	43,208,000	43,208,000	43,208,000	207,402,000
	3층	3	213,754,000	286,660,000	28,666,000	529,080,000	10,000,000	42,908,000	44,090,000	44,090,000	44,090,000	44,090,000	44,090,000	44,090,000	211,632,000
	4층	3	218,031,000	292,390,000	29,239,000	539,660,000	10,000,000	43,966,000	44,972,000	44,972,000	44,972,000	44,972,000	44,972,000	44,972,000	215,862,000
	5~7층	9	222,308,000	298,120,000	29,812,000	550,240,000	10,000,000	45,024,000	45,853,000	45,853,000	45,853,000	45,853,000	45,853,000	45,853,000	220,098,000
	8~15층	24	226,585,000	303,850,000	30,385,000	560,820,000	10,000,000	46,082,000	46,735,000	46,735,000	46,735,000	46,735,000	46,735,000	46,735,000	224,328,0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층별, 향별, 일조권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 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계약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가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본 주택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임.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공급세대수

구분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합계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국가 유공자	2	2	2	6	5	0	2	0	1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2	6	4	0	2	0	16
	중소기업 근로자	1	1	2	6	4	0	1	0	15
	장애인	2	2	2	7	5	1	2	0	2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6	6	8	26	17	1	7	4	75
신혼부부 특별공급	-	11	11	17	51	34	2	14	0	14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1	3	8	6	1	2	2	24
생애최초 특별공급	-	4	4	6	18	12	1	5	0	50
합 계		28	28	42	128	87	6	35	6	36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21.02.02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2021.02.02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현재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71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을 받은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추천기관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7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대구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 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14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1.02.25.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계약서 상의 계약 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②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 건본주택 * 세무서 또는 홈텍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84호(2018.12.11.)]에 따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24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청약과열지역)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 85㎡이하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50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인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1.02.25.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130%}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5.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증빙서류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3호(2020.09.29.)]에 따름.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세무서 * 해당직장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②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 견본주택 * 세무서 또는 홈텍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연속 6개월 이상 거주(2020.12.17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성년자(만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재·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대구광역시 동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입주자저축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 기재 등)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주택형별부 총,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1순위(기타지역), 일반공급 2순위(해당지역, 기타지역)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 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하여 차순위 청약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경쟁률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구 내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해당청 제한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해당청 제한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당첨 주택형별 해당청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름(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의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됨(2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및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의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향후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적용 제한자로 관리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해당하는 청약예금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예치금액이 같거나 작은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입주자저축 관련 기준사항 - 청약예금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 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청약예금 지역 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신청 가능 - 입주자저축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입주자저축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 별 자격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75%).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 수에는 제외됨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3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제한	※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되지 않은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청약제한	※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의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및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였다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청약 가점제 적용

구 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 이하	75%	25%
전용면적 85㎡ 초과	30%	70%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3조, 별표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청약자의 세대원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자 - 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 소유에 포함되며,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형 자가 주택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

	격을 말합니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갑습니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으로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출입국사실증명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기간 기재) ■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직계존속의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 초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 전원, 주소변동포함) - 출입국사실증명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기간 기재)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 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및 입주권 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부칙 제565호 제3조)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 사업) 또는 사업 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 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 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①, ②의 처리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 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 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⑦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적법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총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 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당 지자체의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 등) 하여야 한다.
* 단,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나 건축물대장 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 내용은 무허가 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⑨ 소형·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소형·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아래 각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
단,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 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⑩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 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
- 접수 결과 경쟁 발생 : 정당 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로 봄
- 접수 결과 미달 발생 : 정당 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 소유 아님.(단, 정당 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로 봄)

IV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특별 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6.28(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 ~ 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 ~ 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모바일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 공급	1순위 (해당지역)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2020년 12월 17일 이전부터 계속거주)	2021.6.29(화) 08: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1순위 (기타지역)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및 경상북도 거주자	2021.6.30(수) 08:00 ~ 17:30	
	2순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거주자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021.7.01(목) 08:00 ~ 17:30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을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인증)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청약일정 분리에 따른 청약유의사항

(1)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함(위반시 부적격 처리됨)

(2)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경상북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해당지역 접수일에는 청약이 불가함

(3)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하며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네이버 인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을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을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u>청약자가 원할 경우</u>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청약자격 사전관리」⇒「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계약 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 공급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또는 직계존 · 비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일 경우
일반 기관추천		○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당첨 시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합니다.

다자녀 가구		○	기본증명서	자녀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청약 신청자가 「한 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기본증명서	자녀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 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 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아래 [소득입증서류] 참조
노부모 부양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기간이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아래 [소득입증서류] 참조
	○		소득세 납부	본인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빙서류]참조
일반공급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구 분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1년 07월 09일 ~ 2021년 07월 18일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모델하우스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1023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의 별도 안내에 따라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당사가 지정한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방법	• 층/동/호 구분없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는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점제 당첨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의 75%를 가점제로 25%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가점제로 7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단,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의 3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세대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t/2021/yonggye)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 청약홈(www.applyhome.co.kr)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다 무효 처리 됨.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음.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www.applyhome.co.kr)되며, 입주자 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 일정 및 계약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1.07.07(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홈”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1.7.19(월) ~ 2021.7.23(금) 5일간(10:00~17:00) -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1023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모델하우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으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건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공급계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건본주택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청약Home’ 모바일 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검색)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7.7(수) ~ 2021.7.16(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7.07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일반공급)		○	자격검증서류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제(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일반공급 추가서류 (1순위 당첨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 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함.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현장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분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함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대구광역시 동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에는 청약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2020.10.20.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하며, 거래금액과 무관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합니다.
- 동법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후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 또는 동점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후 순위의 예비입주자보다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1차)	DGB대구은행	504-10-414315-9	아시아신탁(주)
계약금(2차), 중도금 및 잔금	DGB대구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해당동호수

-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2차),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중도금 및 잔금계약인 모계좌(DGB대구은행 504-10-414315-9, 아시아신탁(주))으로 관리됩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수입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1차)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
(예시 2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2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 이자 무이자 사업이며,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증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발코니 확장 금액	6,090,000	6,710,000	8,190,000	9,170,000	8,790,000	9,670,000	7,390,000	8,850,000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확장 계약시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정확한 일자 및 조건은 추후 통보함).
 -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확장 계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에어컨 매립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환기 부주의로 인한 결로 발생시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선희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희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음.
 - 발코니 확장 시 관련 법령 상 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 확장시 선택 품목

1. 주방 마감재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주방 마감재	벽 : 타일, 상판 : 인조대리석	벽,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	

• 판매가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935,000	945,000	3,278,000	3,626,000	3,546,000	3,046,000	2,965,000	3,636,000

2. 현관 중문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현관 중문	미설치	3연동 유리슬라이딩도어 + 천정 간접조명	

• 판매가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1,980,000	1,980,000	2,040,000	2,040,000	2,040,000	2,040,000	2,040,000	2,040,000

※ 현관 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슬라이딩도어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슬라이딩도어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딩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3. 거실/주방 바닥재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거실/주방 바닥재	강마루	타일	

• 판매가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672,000	664,000	877,000	1,102,000	1,010,000	976,000	1,042,000	1,209,000

4. 침실1 붙박이장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선택형 - 3안	비 고
침실1 붙박이장	미설치	붙박이장(수납장 타입) 추가	붙박이장(TV장 타입) 추가	[평형별 붙박이장 Type] - 슬라이딩장 설치 : 59A, 59B, 74A, 84A, 84C, 84D, 99A - 여닫이 + 슬라이딩장 혼합 : 84B

• 판매가(2안)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2,096,000	2,199,000	2,302,000	2,511,000	2,501,000	2,511,000	2,511,000	2,511,000

• 판매가(3안)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	-	2,342,000	2,554,000	-	2,554,000	2,554,000	2,554,000

※ TV장 선택시에는 74타입-42인치 / 84,99타입-55인치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 침실1 슬라이딩 붙박이장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매립형 붙박이장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매립형 붙박이장	미설치	침실2,3 매립형 붙박이장	

• 판매가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	-	-	708,000	650,000	-	-	985,000

6. 침실2 슬라이딩 도어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침실2 슬라이딩 도어	목창호도어	슬라이딩도어	

• 판매가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	-	-	1,173,000	1,173,000	-	-	1,238,000

※ 슬라이딩 도어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슬라이딩도어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슬라이딩도어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딩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7. 대형 아트월타일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대형 아트월타일	400*800 타일 / 벽지	600*1200 타일	

• 판매가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85,000	404,000	274,000	365,000	286,000	443,000	387,000	510,000

8. 드레스룸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드레스룸 특화	침실3	드레스룸 특화	- 59A: 기본형(1안) 선택시 침실3으로 시공

• 판매가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4,452,000	-	-	-	-	-	-	-

9. 주방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주방 특화	기본 주방	주방 특화	[평형별 주방 특화 아이템] - 84A: 키큰장 수납추가(고급화) - 84C: 키큰장, 본주방 수납추가 + 식탁 일체형 아일랜드

• 판매가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	-	-	172,000	-	2,884,000	-	-

10. 조명특화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조명 특화	일반 조명	조명 특화(거실/주방/복도 간접등 설치)	

• 판매가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1,192,000	1,651,000	2,481,000	3,050,000	2,467,000	2,882,000	2,301,000	3,418,000

11. 클린존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클린존 옵션	수납장	의류관리기(화이트 색상)	

• 판매가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	-	1,270,000	1,270,000	1,270,000	1,270,000	1,270,000	1,270,000

※ 의류관리기 옵션 선택시 삼성전자, DF60T8300WR(L) 제품이 설치되며 사용 시 소음, 진동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가전 옵션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위치	일반형	공기청정형	제조사	비고
59A 59B	선택 1	거실+침실1	2,800,000	3,400,000	삼성전자	실내기 2대
	선택 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400,000	6,600,000		실내기 4대
74A	선택 1	거실+침실1	3,000,000	3,600,000		실내기 2대
	선택 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600,000	6,800,000		실내기 4대
84A 84B 84C 84D	선택 1	거실+주방+침실1	4,400,000	5,300,000		실내기 3대
	선택 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6,900,000	8,400,000		실내기 5대
99A	선택 1	거실+주방+침실1	4,500,000	5,400,000		실내기 3대
	선택 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200,000	8,700,000		실내기 5대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 2개소(거실, 침실1)인 매립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하며, 이는 공기청정형 선택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리모콘을 제공합니다.

[빌트인가전]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품목	규격	모델명	제조사	금 액	비고
전타입	하이브리드쿱탑	하이라이트2구+가스1구	GRA-BH301H	SK매직	590,000	택1
		인덕션2구+가스1구	GRA-BI300H	SK매직	820,000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CIR-F3122FLBE	쿠첸	550,000	
		인덕션3구	CIR-B3IH3312FLBI	쿠첸	650,000	
	전기오븐	일반형	HSB-N361B	삼성전자	450,000	택1
		고급형(스팀오븐)	NQ50H5533KS	삼성전자	75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	RQ22K5L(R)01EC	삼성전자	1,200,000	-
	에어브러시	-	DSC-300	그렉스	220,000	-
74A, 84A, 84B 84C, 84D, 99A	식기세척기	일반형	DWA-7505B	SK매직	620,000	택1
		고급형(터치온)	DWA-81R5B	SK매직	990,000	

13. 무상옵션

[김치 냉장고장]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김치 냉장고장	미설치(수납장)	설치	59A, 59B, 84A, 84B, 84D 무상제공

[주방 장식장]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주방 장식장	미설치(벽체:도배마감)	설치	59A, 59B 무상제공

■ 비확장시 선택품목

1. 주방 마감재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주방 마감재	벽 : 타일, 상판 : 인조대리석	벽,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	

• 판매가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565,000	455,000	1,529,000	1,543,000	1,691,000	1,846,000	1,546,000	1,725,000

2. 현관 중문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현관 중문	미설치	3연동 유리슬라이딩도어 + 천정 간접조명	

• 판매가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1,980,000	1,980,000	2,040,000	2,040,000	2,040,000	2,040,000	2,040,000	2,040,000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슬라이딩도어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슬라이딩도어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딩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3. 거실/주방 바닥재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거실/주방 바닥재	강마루	타 일	

• 판매가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524,000	481,000	674,000	821,000	845,000	802,000	836,000	894,000

4. 침실1 붙박이장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선택형 - 3안	비 고
침실1 붙박이장	미설치	붙박이장(수납장 타입) 추가	붙박이장(TV장 타입) 추가	[평형별 붙박이장 Type] - 슬라이딩장 설치 : 59A, 59B, 74A, 84A, 84C, 84D, 99A - 여닫이 + 슬라이딩장 혼합 : 84B

• 판매가(2안)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2,113,000	2,218,000	2,322,000	2,532,000	2,522,000	2,532,000	2,532,000	2,532,000

• 판매가(3안)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	-	2,342,000	2,554,000	-	2,554,000	2,554,000	2,554,000

※ TV장 선택시에는 74타입-42인치 / 84,99타입-55인치 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 침실1 슬라이딩 붙박이장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침실2 슬라이딩 도어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침실2 슬라이딩 도어	목창호도어	슬라이딩도어	

• 판매가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	-	-	1,173,000	1,173,000	-	-	1,238,000

※ 슬라이딩도어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슬라이딩도어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슬라이딩도어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딩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6. 대형 아트월타일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대형 아트월타일	400*800 타일 / 벽지	600*1200 타일	

• 판매가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56,000	44,000	47,000	54,000	52,000	52,000	47,000	54,000

7. 드레스룸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드레스룸 특화	침실3	드레스룸 특화	

• 판매가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3,820,000	-	-	-	-	-	-	-

8. 조명특화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조명 특화	일반 조명	조명 특화(거실/주방/복도 간접등 설치)	

• 판매가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959,000	732,000	1,190,000	1,379,000	1,696,000	1,463,000	1,189,000	1,533,000

9. 클린존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기본형 - 1안	선택형 - 2안	비 고
클린존 옵션	수납장	의류관리기(화이트 색상)	

• 판매가

59A	59B	74A	84A	84B	84C	84D	99A
-	-	1,270,000	1,270,000	1,270,000	1,270,000	1,270,000	1,270,000

※ 의류관리기 옵션 선택시 삼성전자, DF60T8300WR(L) 제품이 설치되며 사용 시 소음, 진동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가전 옵션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위치	일반형	공기청정형	제조사	비고
59A 59B	선택 1	거실+침실1	2,800,000	3,400,000	삼성전자	실내기 2대
	선택 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400,000	6,600,000		실내기 4대
74A	선택 1	거실+침실1	3,000,000	3,600,000		실내기 2대
	선택 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600,000	6,800,000		실내기 4대
84A 84B 84C 84D	선택 1	거실+주방+침실1	4,400,000	5,300,000		실내기 3대
	선택 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6,900,000	8,400,000		실내기 5대
99A	선택 1	거실+주방+침실1	4,500,000	5,400,000		실내기 3대
	선택 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200,000	8,700,000		실내기 5대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형세대는 기본제공 2개소(거실, 침실1)인 매립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하며, 이는 공기청정형 선택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리모콘을 제공합니다.

[빌트인가전]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품목	규격	모델명	제조사	금 액	비고
전타입	하이브리드쿨답	하이라이트2구+가스1구	GRA-BH301H	SK매직	590,000	택1
		인덕션2구+가스1구	GRA-BI300H	SK매직	820,000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CIR-F3122FLBE	쿠첸	550,000	
		인덕션3구	CIR-B3IH3312FLBI	쿠첸	650,000	
	전기오븐	일반형	HSB-N361B	삼성전자	450,000	택1
		고급형(스팀오븐)	NQ50H5533KS	삼성전자	750,000	
	에어브러시	-	DSC-300	그렉스	220,000	-

■ 추가 선택 품목 유의 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일자 및 조건은 추후 통보함)
- 추가 선택품목(유무상옵선)은 사업주체, 시공사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고, 제품사양은 견본주택 및 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 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견본주택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하이브리드쿱탑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3구 가스쿱탑이 기본 시공됨. (제조사: 하츠 / 모델명: SSGC-3605SABH)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및 , 에어브러시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수납공간이 기본 시공됨.
- 빌트인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평면 및 구조에 따라 냉장고 문열림 방향이 다를 수 있음.
- 에어브러시는 본체에 설치된 종이주머니에 흡입물이 쌓이는 방식으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 주기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전류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 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우리은행	1005-304-182866	(주)대우건설
잔금	우리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동호수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옵션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의 경우는 계약 체결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모계좌(우리은행 1005-304-182866 (주)대우건설)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예 : 101동 801호 홍길동의 경우 “1010801홍길동”이라고 기재]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VII 유의사항

■ 기타유의사항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발코니 창호는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창틀, 하드웨어 등 창호사양 포함)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는 59A,84A-C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건립타입의 마감 및 카탈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 제품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59B - 59A / 74A,84B,84D,99A - 84A 참고)
 - 견본주택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전시된 세대의 외부벽체 및 외부 바닥마감, 조경 및 시설물 등은 견본주택 전시용으로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시 외벽은 해당 위치의 외벽마감(수성페인트 등), 바닥은 외부 조경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마감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그릴창호(실외기실 등)는 인허가 및 소방 등의 협의사항, 현장시공 여건 및 제품개선 등의 사유로 규격, 색상, 하드웨어(손잡이, 시건장치 등), 개폐방향 및 형식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무상선택 또는 유상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전시품목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세대의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무상선택 또는 유상옵션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일부 세대는 유상옵션 미선택시 평면형태, 제품품목, 조명기기의 위치, 시스템반 설치유무 및 길이, 주방가구의 형태 또는 길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유무상 옵션 선택결과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혹은 샘플로 전시된)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과의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부에 연출용 조명을 포함한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보형 세대 선택시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마감재, 제품품목 등)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타일류,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마루, 타일 등)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면형태 및 가구형태(일부 유상 또는 무상 등)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등의 CG등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건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평면형태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가구(색상, 마감, 형태 및 디자인) 및 마감재에 대한 내용은 상담석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시공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건본주택에 생략 또는 표시(설치)된 우.오수 배관, 선홍통과 발코니수전, 조명기기(등기구), 배선기구(스위치 및 콘센트), 급/배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 점검구 등의 제품사양과 수량 및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 마감재리스트 등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건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건본주택 및 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CG 등은 일부 내용이 최종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인허가 진행상황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외부조경 및 외부마감 포함) 또는 카탈로그, 팸플렛 등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 투시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계약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유효 동선 확보, 설비배관 공간 확보,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 내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D/A,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수경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상에 생략되어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조경 바닥마감 색상 및 패턴은 본시공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임.
-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변경)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의 미건립 평형의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액세서리 등)제품 등은 동일 평형대의 건립세대에 설치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되며 일부 타입은 평면 특성상 일부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액세서리 등)가 변경되어 설치되거나 미설치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건본주택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사에는 설치되지 않음.
-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은 건본주택 오픈전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실제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각종 전시상품 및 유상옵션 품목이 포함된 사진 또는 동영상이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건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음.

○ 분양홍보물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입면계획, 색채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분양사무소 및 현장 관계자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차도 및 보도), 공공청사, 학교, 근생시설, 의료시설, 보육시설, 종교시설, 지하철 역사 및 노선, 버스정류장 및 노선,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각종 인허가 과정 및 시행주체 또는 국가 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 분양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 분양홍보자료,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건본주택내 사인물 및 모형 등에 표현된 계획도로,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시설 등은 향후 정비계획 변경, 각종 심의,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 결과, 현장 여건, 설계변경 등으로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세부계획(건물의 형태 및 배치, 출입구 및 통행로,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광역위치도(약도 및 지도 포함),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자료의 평면은 입면재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므로 동일한 평면이라든가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분양사무소 및 현장 관계자를 통해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홍보물 및 건본주택 내 모형에 표현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외부 시설물의 디자인 및 색채, 마감재, 사인물, 설치위치 등은 디자인 및 사용성, 시공성 개선 등의 사유로 분양 이후에 해당 인허가청 협의의 통하여 디자인 보완 및 계획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설계

1. 일반사항
 - 본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각 시설의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단지모형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현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재 측량결과에 따른 설계변경(대지면적 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경사지에 계획된 관계로, 동별로 차량 및 보도 이동시 이동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동의 주변 레벨관계, 동출입구의 위치, 단지 내외부 이동동선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단지,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각종 기반시설의 이용 및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시설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제기나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고,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구조 및 흠막이 설계는 실시 설계 시 상세한 검토 및 시공계획에 의해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 최대 유효 지반가속도 0.224g임.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구조는 현장여건에 따라 PC + RC 복합공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변경 시 기인가도서 상의 내용과 견본주택에 전시된 사항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허가 진행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시 또는 이후 해당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아파트), 각종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피트공간은 지반현황,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시행인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계약자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단지 내·외간 레벨 차에 의해 일부 세대의 전면/후면/측면의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석축, 자연경사처리 구간의 설치여부, 단지내외 연결보도 및 경사로, 계단,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 및 선형이나 공법, 위치 등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허가 진행 및 본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물당, 창틀 모양, 줄눈, 옥상구조물 등), 지하/지상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천창, 드라 이어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심의 등 인허가 결과, 구조 및 디자인 의도 등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 면적은 소수점 둘째 또는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둘째,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체 설치로 인한 벽체돌출 및 실사용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타사 또는 당사 타 현장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최종사업시행인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 주체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임.
 - 도로, 하수, 가스 등의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인에게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확장시의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의 단위세대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 하더라도 면적에 차이가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정비구역내에 설치되는 도로는 기부채납부지로 단지 내 도로가 아니므로 입주인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주변 도로는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측량결과 또는 인허가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동선, 시설물, 차선 폭, 경사도 및 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녹지, 등은 현재 상황 또는 계획을 보여주는 것(아파트 시공사의 공사범위가 아님)으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임.
 - 구역외 도로설치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계획보다 지연 설치될 수 있으며, 구역내 계획된 도로 및 기타 기반시설 등은 향후 인허가 결과(실시계획(변경)인가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함.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 면적 변경 및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함.
-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및 경관조명, 측면 로고설치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등)은 입주자 부담임.
- 대지경계 내 외부도로와 접한 보도 일부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관리청(동구청)에서 무상으로 점용하며 공용 보도로 사용됨.
- 본 단지는 동별로 구분하여 시공하고 일부 공용부 마감은 시공구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 단지배치/조경

- 출입구 근방에 설계된 주동의 경우 소음 및 분진, 및 차량 헤드라이트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문주 등 구조물로 인해 조망권이 일부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사업(변경)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항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다.
- 본 단지는 단지 내-외부 레벨차로 인한 경사로, 계단, 옹벽, 석축(조경석), 자연경사 등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부출입구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를 위한 드롭존이 계획되어 있으나, 본공사시 드롭존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도로선형, 주정차 가능대수 등은 변경될 수 있음.(주민들의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드롭존은 삭제 또는 이동될 수 있음)
- 차량 출입구(비상차량동선 포함)과 보행자 출입구로 인한 인접세대의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가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해당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 진동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근처 동의 일부세대는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 분진 및 냄새, 진동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운동시설, 시니어클럽, 작은도서관(독서실 포함)이 설치되는 곳의 근방 주동은 해당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 진동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부지내 거리 차이로 인하여 단지 출입구에서 떨어진 동의 경우, 도보 및 차량 이동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내 각종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에 불편한 동의 있으니, 계약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에 면한 인접대지 레벨 및 지층성상 변동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의 종류,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에 인접한 동의 경우 주변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시공사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높이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 형태 및 종류, 노출범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단지별 단지내 모든 공용시설(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작은도서관, 수영장, 생활지원센터, 지하주차장 등)은 공동 사용하여야 하며, 조합 및 분양아파트와 택지 구분없이 계획되었음.
- 레벨 차이로 인해 인접 세대, 인접한 동 간 층수가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층수라 하더라도 주변의 지면높이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상담사나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등을 통해, 계약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은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시설이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배치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 비치된 모형도, 도면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 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D/A,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옹벽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구조상 보강시설물에 따른 점용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D/A 및 환기창, 생활폐기물보관소, 가스정압기실 등 단지내 시설(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별, 세대별로 해당 시설물과의 거리는 차이가 있고 이용이 필요한 시설물의 사용에 불편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시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실외 주민운동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 및 펜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난간은 사용자 안전을 고려하고,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수직난간으로 설치 될 수 있음.
- 단지 외곽의 돌쌓기 위치 및 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단지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생활폐기물보관소, 근린생활시설용 생활폐기물보관소가 설치될 경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용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 소방차 전용주차구획 등으로 조경 및 시설물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채광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시설물 및 식재 등의 훼손 우려에 따라 이삿짐 운반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단지 내 조경, 동원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조경, 세부 식재계획(위치, 규모, 수종 등) 및 조경선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주, D/A 등 각종 시설물 또는 지상 구조물의 크기 또는 위치 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외부 엘리베이터 등의 지상구조물은 기능상 면적, 높이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는 조망이 간섭 될 수 있음.
- 문주 설치위치 및 설치개소, 형태, 높이, 폭,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추후 공사 진행간 특화 설계 반영 등으로 인해 문주의 형태, 높이, 폭, 마감재, 컬러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조경식재, 각종 외부조명,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녹지, 도로, 학교, 하천, 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단지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발전기 및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 , 채광을 위한 답라이트 등(설치시)의 지상 돌출물이 각동 필로티 또는 지상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 홍보물 (모형/배치도/분양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일부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공고일 기준 대지경계 주위 전선 지중화 작업이 미확정된 상태로, 향후 입주 시 지상에 전선주 및 전선이 위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주 전후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수경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수경시설에 수질정화설비를 반영할 예정이나 이는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수질은 담수기간, 이용횟수 등 운영 및 유지관리상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단지 내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우.오수는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 될 수 있음.
- 101동, 106동, 107동, 108동, 111동, 112동 저층부 세대의 경우,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권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1동, 106동, 107동, 108동, 111동, 112동 저층부 세대의 경우 1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설치로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부속동 옥상의 유지보수 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높이/유계/운동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필로티 위층 세대를 펼치 확인하시기 바람.
- 106동 저층부 세대 경우 1층에 근린생활시설 쓰레기보관시설 및 주차장 설치로 인해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차량통행으로 차량 소음, 진동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105동, 106동 저층부 세대의 경우 후면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를 위한 드롭존이 계획으로 차량통행으로 차량 소음, 진동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102동, 103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저층 세대의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 램프와 인접하여 차량통행으로 차량 소음, 진동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101동, 102동, 103동의 경우 동대구 TG 및 고속도로의 소음 예방을 위해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저층부 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등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102동, 103동의 경우 동대구 TG 및 고속도로 위치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10동, 111동, 112동의 경우 중앙고속도로 위치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10동, 111동, 112동의 경우 중앙고속도로의 소음 예방을 위해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저층부 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등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7동과 112동 사이에 단지 출입을 위한 계단 및 외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의 경우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외곽에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보행자 통로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저층부 세대의 경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외곽에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보행자 통로 바닥 마감 색상은 추후 인허가청(동구청)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1단지와 2단지의 부대복리시설등의 공동이용 부분은 입주 후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이용을 결정합니다.
 - ※주민편의 서버버스는 입주후 2년 동안 제공될 예정이며, 이후 운영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입주민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작은도서관, 수영장, 생활지원센터 등)의 세부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1단지에는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골프클럽, 푸른도서관, 피트니스 클럽, 그리러니카페, 수영장, 관리사무실, GX룸 등의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됨.
 - 2단지에는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골프클럽, 푸른도서관, 피트니스 클럽, 관리사무실 등의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됨.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용도는 블록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대복리시설의 사용에 있어 입주세대 간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건립되는 부대복리시설,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분양구분(조합원 • 일반 등)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 1단지와 2단지는 별개단지로, 각 단지 내 건립되는 부대복리시설, 공유시설물은 1단지와 2단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추후 입주민들의 자체적인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름.
 - 각종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마감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생활지원센터), 작은도서관, 시니어클럽 등 각종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 의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등의 이미지 자료 상의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천정고, 입면디자인, 벽체 위치 및 기둥설치 유무 등을 포함한 내부 레이아웃 및 디자인은 인허가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및 제품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생활지원센터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니어클럽,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생활지원센터),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 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사인물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내 · 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어린이집과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외부 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에는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단지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101동, 102동, 106동, 107동, 108동, 112동의 저층부 세대는, 동에 인접한 각종 부대시설(근생 포함)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로 인한 소음, 열기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설치 상세 계획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을 위한 실외기 시설이 101동, 106동 인근 지상, 조정공간 혹은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인접한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부대시설(근생 포함)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는 동에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동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전면 캐노피의 형태, 구조,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시공 시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로 시공될 수 있음.
 - 현 배치에 따른 지하주차장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의제기를 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각 세대의 천정공간 내부에 인접세대를 위한 가스배관 및 에어컨배관, 위생배관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임의로 해당시설을 철거할 수 없음.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공자는 준공 후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현장 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동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보관소, 관리동, 선큰, 주차램프, 외부계단, 문주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체(식당, 관람집회시설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용도는 블록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대복리시설의 사용에 있어 입주세대 간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대구광역시 동구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커뮤니티시설 조기 운영>

-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 동의 시 입주초기 커뮤니티시설을 조기 운영할 수 있음.
- 커뮤니티시설 조기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음.

· 커뮤니티시설 조기 운영은 당 사업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4.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 출입 근방에 위치한 세대는 환경권 및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단지(101동~112동)와 2단지(201동~209동)의 지하주차장은 서로 분리되어 있음.

· 공동주택 및 근생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면적 증감, 주차대수 변경 및 위치이동 등을 포함)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에 별도 구획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을 위한 각종 배관, 배선 및 가스배관 등의 루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됨.

·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세대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집수정 펌프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저층부 세대는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확장형 주차비율 및 경형 주차비율은 변경 될 수 있음.

·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과 보조석) 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세대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동과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 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주차대수변경 및 위치이동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문주,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차로 폭은 6~7미터 이상이며,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법규기준 준수하여 계획되었음.

·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이며, 이외 층의 주차장 차로 높이는 2.3미터로 해당 법규기준으로 계획되었음.

5. 아파트주동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계단, 엘리베이터홀, 승강기용량, 탑승위치)등은 최종사업시행(변경)인가 도면의 내용에 준하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의 동출입구 및 저층부 3개층의 외벽마감은 지정 석재로 마감될 예정, 계단실 등 코어 외벽, 필로티 내부 및 일부구간 제외될 수 있음이며 석종,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 등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각 동별 석재와 페인트 적용 비율이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저층부 일부 세대는 문주, 동출입구, 부대시설 등과 간섭되어 일부 창호의 조망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 근처에는 지하주차장 급배기를 위한 환기창(D.A)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필로티, 주민운동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이 위치하여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동배치상 생활폐기물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저층부는 석재마감 및 상부 몰딩설치에 따라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일부 저층부 차별화마감 적용시, 별도마감 적용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동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동의 경우 필로티 캐노피가 외벽면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필로티 계획 및 벽 또는 기둥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필로티 하부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소 및 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지하1층에 동별 1개소 계획 중인 무인택배시스템(동수에 비해 설치개소가 적으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 예정임)은 동별,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세대의 경우 택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각동별 필로티의 사이즈, 천정과 및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동 필로티 내에는 각종 환풍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동 지하층에 제연실(제연환풍기)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 됨.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지붕 및 옥탑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층(측벽 포함)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장치, 항공장애등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안면방해 등을 받을 수 있음.

· 동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동별,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PIT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세대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집수정 펌프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저층부 세대는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 1호, 102동 1호, 104동 1호, 2호, 105동 1호, 2호, 107동 4호, 5호, 108동 4호, 5호, 109동 4호, 5호, 111동 1호는 엘리베이터가 인접한 세대이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람.
- 11층 이하의 세대에는 비상시 소방대원 진입을 위한 창호설치로 창호 가운데에 20센티 이상의 역삼각형 표시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는 관련법령에 근거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람.
- 84B 타입의 안방 벽면에 설치되는 창호는 서비스면적의 발코니 확장을 위해 필요한 창호로, 추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해 크기 확장 및 삭제 등 설계변경 할 수 없음,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84D 타입의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창호는 다른 타입의 다용도실 창호보다 작으며, 이는 다른 동과의 인동거리 확보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치수로, 추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해 크기 확장 및 삭제 등 설계변경 할 수 없음,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104동 1호, 105동 1호, 107동 5호, 108동 5호, 109동 5호, 111동 4호, 112동 4호 경우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채광창이 세대 현관문과 마주보는 세대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좌우대칭 및 세대현관 출입구 방향이 상이)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 단지 내 각종 공용시설(E/V,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시 각 동별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차이가 있어, 사용상의 여건(일부 동의 경우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에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최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제습기 가동(동별, 라인별, 층별로 적용유무 및 적용위치 상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될 예정임.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고, 창호의 크기 및 형태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지 내 거리 차이로 인하여 단지 출입구에서 떨어진 동의 경우, 이동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내 각종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에 불편한 동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외부공간에 설치 예정인 쓰레기분리수거 보관시설은 동별,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세대의 경우 해충, 냄새 및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택배차량 및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각 동 최상층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층수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 침실은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됨) 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 동출입구 내부의 평면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기타층 엘리베이터홀과 계단실의 평면 및 창호형태는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용부의 창호(계단실, E/V홀 등)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 위치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동의 경우 평면구성에 따라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하여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이동통신 안테나 및 관련장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자체, 이동통신사들과의 협의한 결과에 따라 해당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될 예정임.
- 아파트 옥탑 및 고층, 중층의 측벽 모서리 부위에 항공장애등이 설치될 수도 있으며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안면방해 등을 받을 수 있음.
- 옥상구조물의 상부면은 도장 등 별도의 마감공정이 적용되지 않음.
- 푸르지오 BI를 포함하는 사인물의 위치, 개소, 수량 및 규격은 실시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단위세대

<공통>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바닥에 층간소음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고, 선택 가능한 유무상업선 항목에 차이가 있으니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선택형 타입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타입으로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변경이 불가함.
- 세대내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위치 및 가구/선반의 배치, 주방 싱크대 수전위치, 현관문 도어의 방향은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음.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도면 및 견본주택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벽 및 세대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타입의 경우, 욕실 뒷선반의 깊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된 시설물에 입주시 이를 임의 변경하여 발생한 하자에 보수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준공시 주택법 관련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도로변 일부 세대에 방음벽 설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옵션품목임)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
- 실외기실 내부에는 물건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대피공간이 설치되므로 계약 시 필히 확인하고 대피공간에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화재피해책임은 해당세대에 있음.
- 실외기실 루버창의 경우 실제 시공시 인허가 및 소방 등의 협의사항, 현장시공 여건, 제품개선 협력업체 계약관계 및 세대환기장치, 각종 덕트의 설치(환기덕트)로 인해 형태, 규격, 개폐방향, 손잡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일러가 설치되는 다용도실, 발코니, 보일러실 등은 거울철 보일러 및 급수, 배수배관 등의 동파방지를 위해 반드시 창호 및 루버 등 열린 부위가 없도록 관리가 필요함.

<마감재>

- 세대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견본주택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경량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거실 우물천장은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공사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 될 수 있음.
- 세대내 천정물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향상을 위해 설치되며 견본주택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조석의 경우, 재료의 접합 연결부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고,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포함)로 변경될 수 있음.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침실(안방 포함) 가구는 침실 Size 및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설치바람.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가구 하부 및 후면 등 미노출부위에는 마루, 타일, 벽지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가 사용될 경우, 자재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미사용시 해당 없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단, 일부 중국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KS기준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제품 생산기준이 KS기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타일 나누기(현관,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이 시공된 부위)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외부 창호 디자인(색상 포함), 프레임사이즈,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현장여건, 풍동실험 및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델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제공 및 옵션제품품목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은 같은 제품일지라도 등급신청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흠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침실, 욕실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및 다용도실 등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에서 세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은 외벽에 노출 설치되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가스계량기 설치에 따라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내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

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마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또한 가스계량기 설치위치에 따라 가전 상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건조기 2단 적재 불가 등)

- 세대 보일러의 점검을 위해서는 세탁기 등 가전류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욕실배관이 해당 층 하부에 설치되는 층하배관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하부세대 욕실내 점검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층하배관 또는 PIT내 입상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욕조하부 및 샤워부스 바닥, 발코니, 일부 싱크대하부 공간등은 난방이 제공되지 않음
- 욕실 천장에 점검구 및 환기팬이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불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음.(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마주 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전기기기(월패드,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거실, 안방 등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함.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으며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전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벽걸이TV 설치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입주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에어컨 매립배관이 설치될 경우 해당 부위는 별도의 마감재로 설치될 수 있으며 매립배관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스프링클러헤드 및 욕실배기 설치를 위하여 거실 또는 침실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 시스템은 각 세대 외부 측벽으로 배출하는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세대에 이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 시 주방 및 욕실 배기를 위한 덕트가 발코니 상부에 노출 시공될 예정임.
- 배기 및 환기 시스템의 경우 타입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수전, 드레인, 선풍통, 보일러 등의 설치 위치 및 개수, 사이즈 및 제품사양은 변경(위치변경, 추가 또는 미설치 등)될 수 있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 방식이 적용되어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전열교환기가 노출형으로 설치되며 후렉시블호스 등 관련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되어(천장, 벽)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견본주택에는 미설치되어 있음), 전열교환기 등의 설치로 인해 발코니 일부 선반의 사용에 제약이 있거나 견본주택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고, 본 공사 시 전열교환기의 사양, 제조 및 설치업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환기용 덕트의 재질 및 모양은 타원, 사각 등 다양한 형태와 재질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타원, 사각, 휜 등의 여러 형태로 시공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인접한 세대의 경우, 해당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 진동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1층, 2층, 최상층 세대는 방범용 감지기가 설치 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일부 발코니에만 선풍통 및 배수구가 설치됨
- 지하층에 저수조, 기계실, 빗물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집수정 등이 설치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전기실에 인접한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험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1층)는 세탁기 설치 예정위치에 저층배관 통기를 위한 발코니 입상배관이 하나 이상 더 시공될 수 있음.
- 2~10층 세대는 관계법령에 따라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완강기 설치로 인한 공간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임의 철거, 제거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세대에 있음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내에 전열교환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와 각종 배관 설치 등으로 일부 타입의 경우 공간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 수전위치, 바닥단차 부위는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주요 개소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2 제4항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옥외안테나는 101동, 102동, 108동, 112동, 201동, 203동, 209동 옥상층에 설치되며, 중계장치는 102동, 108동, 201동, 209동 옥상층 및 지하 제연헬룸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파측정 후 설치위치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동통신용 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옥상, 지하 헬룸, PIT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전파측정 후 설치위치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층에 태양광발전 설비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일조량 등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 예정)
- 푸르지오 스마트 홈(가칭)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함.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 환기, 가스밸브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KT,LGU+,SKT)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함.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 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람.
- IoT 가전 연동은 이동통신사의 App을 통해 구현되므로,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함.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됨.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 가능함.(소비자가 별도 구축)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음.
- 한전 소유의 전기설비(한전패드), 전기인입 맨홀 및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1층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한 동은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에 따라 소음 및 불빛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의 차량 공유 서비스로 필요한 전용 주차공간이 할당 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 / 축벽 /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정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므로,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건본주택과 상이 하며, 일부 침실 및 발코니가 협소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상의 기본형 평면을 참고하시기 바람.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타입의 경우, 주방발코니 내에 세탁기 설치시 보일러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세탁기를 제거해야만 유지보수가 가능할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유무, 발코니 폭,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외기에 면한 실의 경우 발코니가 삭제 또는 축소된 타입은 단열재 설치로 세대 내부로 일부 벽면이 돌출될 수 있으며, 해당 발코니가 삭제되어 확장이 되지 않는 타입이 있으니 계약 전 발코니 유무를 확인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설치 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개소 및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시공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바닥 턱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또는 유상옵션 선택 유무 등에 따라 설치위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비확장형 선택 시 또는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VIII

기타 사항

■ 관리형태지신탁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서우용계개발, 시행수탁자 아시아신탁(주) 및 시공사 (주)대우건설, 대출금융 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태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함.
- 본 공고에서 시행수탁자 아시아신탁(주)는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고에 따른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서우용계개발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서우용계개발과 수탁자 아시아신탁(주)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서우용계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서우용계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
-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신탁사인 아시아신탁(주)를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서우용계개발과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에게 있음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야 함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45일 이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3년 10월 31일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당사 내부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함.

■ 인지사항

- 본 아파트는 인근에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 인근 고속도로는 장래에 확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장공사 후 소음도가 입주시점의 실측소음도(도로관리기관이 측정)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항공기 소음 노출지역으로 그에 따른 주·야간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교육시설(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배치군

- 유치원군 : 4권역 내 분산배치 가능
- 초등학교군 : 용호초에 적정배치 가능
- 중학교군 : 3학교군 내 분산배치 가능
- 고등학교군 :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 내 분산배치 가능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실, 독서실, 작은도서관, 피트니스, 사우나, 카페, 수영장, GX룸 등

-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82021-101-0007800	194,579,511,000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획을, 공사가 입주금납부계획을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획을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획에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획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세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황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건축/토목/기계	전기	소방/정보통신
회사명	(주)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진일기술단	(주)지티엘이엔지
감리금액	2,089,684,000	334,536,364	280,000,000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 명 : 용계동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A1BL

건축주 : 아시아신탁(주)

준공(예정)일 : 2023.06.31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575-12 일원

층수 : 지상15층, 지하2층

면적 : 117,544.8㎡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시아블엔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021-196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1.06.10.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인공기후 운영세칙(2020.04.30))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받았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온대열 평가)

도지이용 및 교통 : 20%

에너지 및 환경오염 : 58%

재료 및 자원 : 67%

물순환 관리 : 21%

유지관리 : 93%

생태환경 : 23%

실내환경 : 65%

종합등급 ☆☆☆☆

2021년 06월 10일

한국부동산원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1단지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용계동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A1BL

준공연도 : 2023.06.31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575-12 일원

층수 : 지상15층 / 지하2층

면적 : 117,544.80㎡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시아블엔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 21-주-에-14-0231

평가자 : 황재원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효율 (kWh/㎡·년)

요구사항

1등급 에너지효율 (kWh/㎡·년)

등급

CO₂ 배출량 (kg/㎡·년)

비율

에너지효율 0

66.1

14

24.4

에너지 효율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율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CO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3.8

49.1

38.6

10.3

급탕

30.7

36.6

28.3

7.2

조명

11.6

11.0

30.2

6.1

합계

66.1

96.7

106.6

24.4

단위면적당 에너지요율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이 실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비효율에 연료비, 전력, 가열, 운송, 변환, 부하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V] 설치되지 않아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받았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6월 28일

한국부동산원장

2021년 06월 28일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용계동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A1BL

2. 신 청 자 : 아시아신탁(주)

3.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575-12 일원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소음을 차단하는 능력

2. 생활소음을 차단하는 능력

3. 생활소음을 차단하는 능력

4. 생활소음을 차단하는 능력

5. 생활소음을 차단하는 능력

다. 환경 관련 등급(계측)

성능항목

성능등급

17. 열환경 적지속 조성

18. 자연환경 적지속 조성

19. 생활환경 적지속 조성

20. 비오염 조성

21. 실내환경 오염물질 제거율 저감률 저감률

22. 자연 환경 조성

23. 단열재의 환경 조성

24. 자연환경 조성

다.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부소음

2. 외부소음

3. 수직소음 전수부분

4. 수직소음 전수부분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온대기 생활환경 적지속 조성

2.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3.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4.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5.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6.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7.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8.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9.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10.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11.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12.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13.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14.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15.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16.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17.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18.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19.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20.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21.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22.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23.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24. 파도한 기온대기 조성

다.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화재 및 화재예방

2. 화재예방

3. 화재예방

4. 화재예방

5. 화재예방

6. 화재예방

7. 화재예방

8. 화재예방

9. 화재예방

10. 화재예방

11. 화재예방

12. 화재예방

13. 화재예방

14. 화재예방

15. 화재예방

16. 화재예방

17. 화재예방

18. 화재예방

19. 화재예방

20. 화재예방

21. 화재예방

22. 화재예방

23. 화재예방

24. 화재예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8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6월 10일

한국부동산원장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3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제7조 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아시아신탁(주)	(주)대우건설

- 55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3층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법인등록번호	110111-3543801	110111-2137895

■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1023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모델하우스

■ 사업지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575-12번지 일원

■ 홈페이지 : <https://www.prugio.com/ht/2021/yonggye>

■ 분양문의 : (053) 961-6700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